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 12호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 조영식 의원 외8
3.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5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안 제1조)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제62조에서 제64조로

수정함.

○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안 제2조)**

- 제9조 중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인용 조문을 제3조에서 제4조로 수정함.

○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 제3조)**

- 제14조제2항 "법 제15조제1항" → "제15조제1항", 제15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 "제14조제2항"으로 오탈자를 수정함.

○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 제7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 제2조제4호 중 인용 법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수정하고 "장해등급" 용어를 명시함.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 조례안예고기간 : 2026. 2. 27. ~ 2026. 3. 6.(초일불산입 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사운영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13,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전화: 061-550-5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2조(「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로 한다.

제3조(「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4조----------.

제2조「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4조----------.

제3조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②제15조제1항----------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 ----------.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 ---------- ---------- ---------- ---------- 제14조제2항---------- ---------- ---------- --

제4조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완도군의회의원의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12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3. 8.>

②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③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 3.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8.>

[제목개정 2022. 3. 8.]